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93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제221589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안 제8조의2 신설)	2

I.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제221589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섭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1. 7.

다. 회 부 일 : 2026. 1.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택지개발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하여 심의함.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현행 법에는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만 존재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됨. 참고로, 「한국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 후 의사록을 익명으로 공개하여 정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대해서는 회의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 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주거정책 대상지역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3. 검토의견

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 ⑤ (생략)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회의록의 작성·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등 에----- ---
<신설>	제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주택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주거정책의 대상지역 및 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상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행법 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¹⁾(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1) 「주거기본법」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록에 대한 공개 의무는 없음.

개정안은 「한국은행법」 상 금융통화위원회²⁾가 결정하는 통화신용정책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의 안건을 심의할 경우 위원의 정보는 익명으로 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되,

주택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상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2) 「한국은행법」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記名)하고 날인(捺印) 또는 서명(署名)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운영규정」

제13조(의사록의 공개 등) ①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의 내용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주택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국민들이 회의 과정에서의 발언 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주요 논의, 심의 결과 등 핵심 사항에 대하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충실히 정보를 제공 중이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되므로 발언 요지 등이 공개될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등을 위해 회의록 공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4